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72호 2014년 7월 4일(금)

공 고

○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4년 7월 4일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389번지
3. 공고기간 : 2014. 7. 4.~ 2014. 07. 18.(14일)
4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허가(신고)번호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조양동	389번지	답	169	50	김경열	2014-건축신고-26호 (2014. 7. 3.)	건축주 : 김경열
속초시 조양동	389-3번지	답	204	41	김경열	2014-건축신고-27호 (2014. 7. 3.)	건축주 : 윤선열

5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위치도 및 현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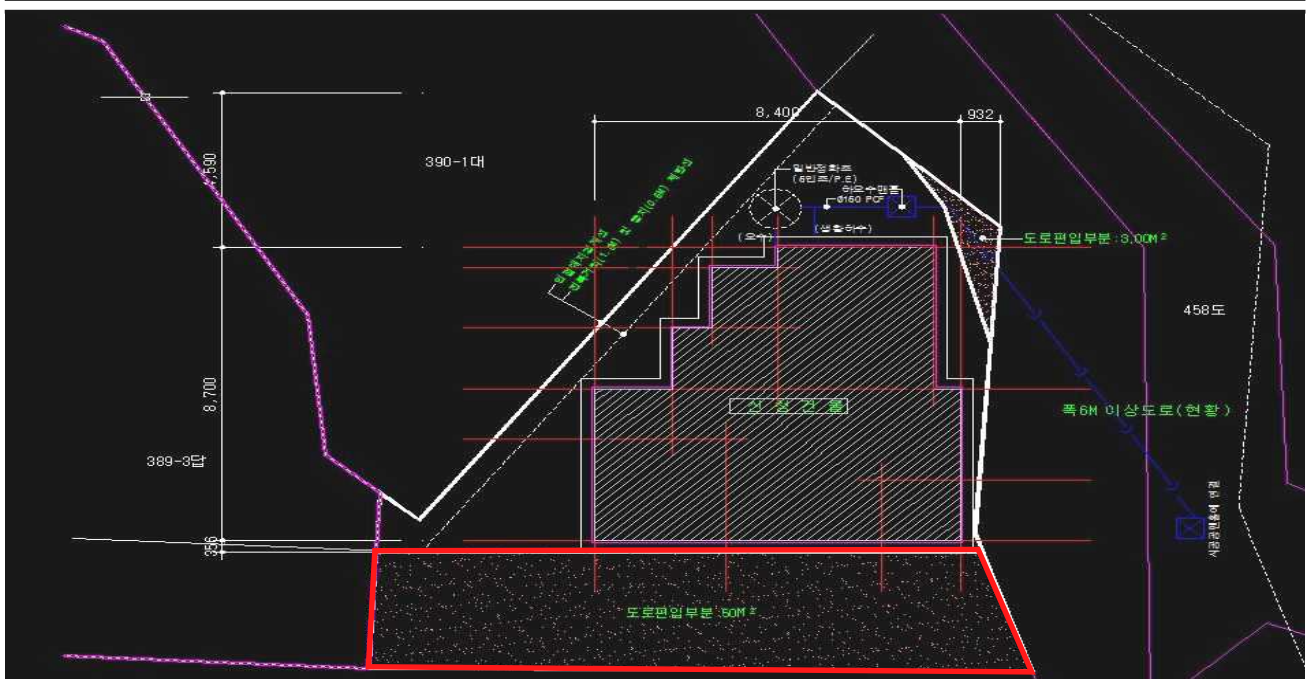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
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